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 참조

상원 법안 998번: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 보건안전법 제116900절, *이하 참조*.

### 1. 목적

본 정책은 '단수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 법안 998번(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16900절, 이하 참조)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수도위생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위생국(전화번호 (650) 728-3545)으로 연락하시면 본 정책의 약관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2. 게시 언어

본 정책 및 본 정책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는 영어, 민법 제1632절에 명시된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수도위생국의 수도 서비스 지역 거주 인구 중 10% 이상이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되고 게시됩니다.

### 3.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의 선행 요건

- A. 수도위생국은 요금이 최소한 60일 이상 연체될 때까지 미납을 이유로 생활용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미납으로 인해 생활용수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7일(영업일 기준) 전에 계정에 명시된 고객에게 전화 또는 서면 통지로 연락해야 합니다.
- B.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A)호에 따라 전화로 계정에 명시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직원은 본 정책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 직원은 납부 일정 조정, 납부 연기, 최소 금액 납부, 미납금 분납 요청 절차, 청구서 검토 신청 및 이의 제기를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C.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A)호에 따라 서면 통지로 계정에 명시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요금 연체와 공급 중단 예정임을 알리는 서면 통지는 등록된 고객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주소가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건물의 주소가 아닌 경우,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건물 주소의 '입주자' 앞으로도 해당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명확하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i) 고객 이름과 주소.

(ii) 연체 금액.

(iii) 생활용수의 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하거나 납부를 조정해야 하는 기한(총괄 관리자(General Manager)의 판단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서가 미납된 날로부터 60일).

(iv) 미납된 요금의 납부 연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v) 청구서 검토 및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vi) 생활용수 서비스 연체 요금의 분납 등 납부 연기, 감액 또는 납부 일정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

(vii)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전화번호와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서면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웹 링크.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 4. 선의의 통지 요건

- A. 고객 또는 해당 거주지에 입주 중인 성인과 전화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인해 우편으로 반송되는 경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해당 거주지를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해 생활용수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 및 미납에 따른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 정책을 남겨두거나 눈에 띄는 곳에 두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B. 고객이 청구서의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납부일 전에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에 연락해야 하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이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총괄 관리자의 검토를 요청한 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이사회 회의 최소 7일 전에 이의 제기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생활용수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 5. 생활용수 서비스 공급 중단에 대한 금지

- A.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미납을 이유로 생활용수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i) 고객 또는 해당 고객의 임차인이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088절 (b)관 (1)항 (A)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해당 부지의 거주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을 증명하는 1차 의료 기관의 증명서를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에 제출하는 경우.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ii) 고객이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일반적인 청구 주기 내에 생활용수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객의 세대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 Medi-Cal, 생활 보조금/주 정부 생활 보조 프로그램의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정한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일반적인 청구 주기 이내에 생활용수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분납 계약, 납부 일정 조정, 납부 기한 연기 또는 감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B. 위에 기재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i) 미납 금액의 분납.

(ii) 납부 일정 조정 참여.

(iii) 다른 요금납부자에게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당되는 미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삭감.

(iv) 납부 일시 연기.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 C. 총괄 관리자는 고객이 6.B항에 기술된 납부 방법 중 어떤 것을 이행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잔여 미납금의 상환이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의 이사회가 승인하고 명시적으로 삭감분을 총당할 목적으로 수도 기금 예산(Water Fund budget)에 이전된 재산세 수입으로 미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삭감이 총당될 경우 총괄 관리자가 미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삭감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납부 방법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 생활용수 서비스는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서비스 중단 최후 통지를 건물 내에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한 후 최소 5일이 지난 후부터 중단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분납 계약, 납부 일정 조정 또는 연체 요금에 대한 연기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 (ii) 분납 계약, 납부 일정 조정 또는 연체 요금에 대한 연기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고객이 현재 부과된 생활용수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6. 수도 공급 재개

- A. 미납으로 인해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생활용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고객에게 생활용수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정한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에 입증한 생활용수 사용 고객에 대해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i) 정규 운영 시간에 이루어지는 재연결에 대한 서비스 재연결 요금을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실제 재연결 비용이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정합니다. 생활용수 서비스 재연결이 정규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1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정규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재연결의 실제 비용이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서비스 재연결 요금으로 정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 내의 재연결에 대한 최대 금액인 \$50 및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재연결에 대한 최대 금액인 \$150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로스앤젤레스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평균을 사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상분을 판단합니다.

(ii) 연체분에 대한 이자 부담금을 12개월마다 면제합니다.

B. 세대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 Medi-Cal, 생활 보조금/주 정부 생활 보조 프로그램의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보조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정한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은 생활용수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정한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간주합니다.

### 7.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관련된 서비스

A. 수도위생국수도위생국이 독립 단독 주택, 다세대 거주 구조물, 이동 주택 단지, 보건안전법 제17008절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합숙소 내의 영구 거주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구조물의 입주 거주자에게 개별적으로 계량이 이루어지는 생활용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주택, 구조물, 단지의 소유자, 관리자, 운영자가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의 요금이 연체되면 수도위생국 수도위생국은 서면 통지를 통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임을 적어도 중단 10일 전에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입주 거주자가 연체된 계정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입주 거주자에게 추가로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수도위생국 수도위생국은 각 입주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수도위생국의 조례, 결의안, 규칙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입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입주 거주자가 총괄 매니저 또는 지명된 자가 거주자 신청인이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수도위생국이 판단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120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수도위생국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하는 요건 등 수도위생국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후 해당 계정에 부과된 요금의 납부 책임을 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수도위생국이 수도위생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 거주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수도위생국은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수도위생국이 판단하는 입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8. 보고 요건

수도위생국은 매년 수도위생국의 웹사이트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미납으로 인한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 건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 9. 본 정책의 한계

## 몬타라 수도위생국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받지 않은 고객의 행위 등 본 정책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이유 이외의 이유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위생국의 능력을 제한, 한정하거나 달리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 10. 연체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타 조치

- A. 수도위생국은 정부 법령 제61115(3)(C)절에 따라 미납 요금에 대한 10%의 연체수수료와 월 1%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B. 수도위생국은 정부 법령 제61115(b)절에 따라 재산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 대장상의 연체 요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C. 이사회는 정부 법령 제61115(c)절에 따라 총괄 매니저 또는 지명된 자가 수도위생국의 법률 고문이 승인한 양식에 납부되어야 할 연체 요금과 연체수수료의 금액, 연체 요금과 연체료의 납부 의무를 진 사람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총괄 매니저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샌마테오 카운티 기록관(San Mateo County Recorder) 사무소에 기록을 남기도록 승인합니다. 상기 절차에는 수도위생국의 증서 기록 의사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에만 증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고객에게는 증서 기록에 대해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수도위생국에 알릴 수 있는 10일의 기간(영업일 기준)이 주어지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의 제기를 고려한 후 해당 증서가 기록될 것을 지시한 후에만 증서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1. 발효일

본 정책은 2020년 2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